

●문화재청공고 제2022-344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1950년대 낙하산 블라우스’ 등 3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문화재청장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1950년대 낙하산 블라우스 등 3건)

1. 공 고 명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cm)	제작연대	소유자(소재지)
1950년대 낙하산 블라우스	1건 1점	○길이 58 ○가슴둘레 88 ○어깨너비 40 ○소매길이 64	1950년대	개인 (서울시용산구 장문로)
1960년대 신생활복	1건 2점	○길이 100 ○가슴둘레 86 ○어깨너비 44 ○허리둘레 72 ○고름길이 88	1960년대	
일제강점기 강제징병 무사귀환 염원 조끼와 어깨띠	1건 2점	○조끼 길이 61, 가슴둘레 98 ○어깨띠 길이 158.8, 너비 7.7	1940년대	

2) 등록 예고 사유

- 「1950년대 낙하산 블라우스」는 6·25전쟁 직후 폐낙하산을 재활용해서 제작하여 판매하다가 인기를 얻자, 수입한 나일론 원사를 편물로 제작하여 만든 블라우스이다. 디자이너 최경자가 대구 피난시절 개업한 국제양장사라는 맞춤옷가게에서 제작한 것으로 당시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수입이 금지된 나일론 섬유가 여성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게 된 당시 시대상황과 편물기술, 봉제 기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다.



앞



뒤

- 「1960년대 신생활복」은 1961년 정부가 생활개선사업을 추진하던 시기에 제시한 표준 디자인을 최경자가 재해석하여 디자인한 의복이다. 1960년대 신생활복은 국민의 의복생활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재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신생활복장’을 제정하고, 이를 널리 보급시키기 위해 전개한 국민재건운동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시 생활복식사 및 한복의 현대화과정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이다.



앞



뒤



탈부착 고름

- 「일제강점기 강제징병 무사귀환 염원 조끼와 어깨띠」는 일제강점기 강제 징집되는 아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어머니가 직접 제작한 유물이다. 국가기록원 소장 강제동원자 유수명부에서 징집 시기, 자대 배치 및 전역 날짜, 아내의 창씨명 등 일제의 국권침탈로 인한 일반 조선 청년의 강제징병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러일전쟁 전후 생겨난 일본의 풍습(천인침)이 조선청년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조끼를 제작하는 데 사용된 점은 일제강점기말 문화침탈로까지 전개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으며, 강제징병의 아픈 과거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수 있는 유물이다.



조끼 앞



조끼 뒤



어깨띠

3. 등록 예고일 : 2022. 10. 17.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자율서식)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 전 화 : (042)481-4891, 4892, 4889
- 팩 스 : (042)481-4899
-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